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도읍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001

발의연월일: 2024. 12. 27.

발 의 자:김도읍·조배숙·권영세

인요한 • 장동혁 • 박성훈

정연욱 • 구자근 • 조지연

권영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은 법률에 따라 일정한 자에 대하여 가입이 강제되는 재난안전의무보험에 대하여 보험회사 등이 법령으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 의무자의 가입 신청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음에 따라, 재난안전의무보험인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항공보험의 경우에도 보험회사 및 공제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 의무자의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제 ·해지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,

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사고 등으로 인한 사고피해자의 원활한 피해 복구 및 일상으로의 안정적인 복귀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보험금 지급청구권 및 공제급여 청구권은 압류하거나 양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(안 제70조 및 제84조).

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항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0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⑥ 보험회사 및 공제회 등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관련 사업을 하는 자(이하 "보험회사등"이라 한다)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려는 자의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보험 또 는 공제 계약을 해제·해지할 수 없다.
- ⑦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험의 보험금 지급청구권 및 공제의 공제급여 청구권은 압류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.

제84조제2항제23호 및 제24호를 각각 제24호 및 제25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3. 제70조제6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험이 나 공제에 가입하려는 자의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 나 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해제·해지한 보험회사등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항공보험 등에 관한 적용례) 제70조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항공보험 또는 공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 다만, 제70조제7항에 따른 압류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 압류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0조(항공보험 등의 가입의무)	제70조(항공보험 등의 가입의무)
① ~ ⑤ (생 략)	① ~ ⑤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⑥ 보험회사 및 공제회 등 제3
	항 및 제4항에 따른 보험 또는
	공제 관련 사업을 하는 자(이하
	"보험회사등"이라 한다)는 대통
	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
	없이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
	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려는 자의
	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을 거
	부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 계약
	을 해제·해지할 수 없다 <u>.</u>
<u><신 설></u>	⑦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험
	의 보험금 지급청구권 및 공제
	의 공제급여 청구권은 압류하거
	나 양도할 수 없다.
제84조(과태료) ① (생 략)	제84조(과태료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2
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	
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	
1. ~ 22. (생 략)	1. ~ 22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23. 제70조제6항을 위반하여 같</u>
	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
	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려는

	자의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
	결을 거부하거나 보험 또는
	공제 계약을 해제ㆍ해지한 보
	<u>험회사등</u>
<u>23</u> . · <u>24</u> . (생 략)	<u>24</u> . • <u>25</u> . (현행 제23호 및 제24
	호와 같음)
③・④ (생 략)	③・④ (현행과 같음)